

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39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2. 20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명백하게 하고 포상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제9조제2항중 “인사위원회”를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하고
- 제9조의2에 “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”을 신설

3. 본 문 : 붙임

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인사위원회”를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4인이상 6인이내로 구성하되, 실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

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포상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“<u>인사위원회</u>”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</p> <p>(신 설)</p>	<p>제9조 (포상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“<u>공적심사위원회</u>”----- -----</p> <p>제9조의2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4인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되, 실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.</p>